

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 (제4조 관련)

구 분	사업종류	일반하역사업			한정하역사업
	항만별 내 용	1 급 지 (부 산 항, 인천항, 울산항, 포항 항, 광양항)	2 급 지 (여수항, 마산항, 동 해 · 목 호 항, 군산항, 평 택 · 당진항)	3 급 지 (1 급 지와 2 급 지 를 제외 한 항)	
1. 시 설	시설평가액 (해양수산물부 령으로 정하 는 하역장비 의 평가액이 총시설평가액 의 3분의 2 이 상 이 어 야 한다)	10억원 이상	5억원 이상	1억원 이상	일반하역사업 의 등록기준 을 적용하되, 관리청은 이 용자, 취급화 물 또는 항만 시설의 특성 을 고려하여 그 등록기준 을 완화할 수 있다.
2. 자본금		2억원 이상	1억원 이상	5천만원 이상	

비 고

1. 관리청은 물동량(物動量) 감소, 항만 조건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지 항만에 대해서는 항만별로 그 사정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해당 등록기준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.
2.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한다.
3. 관리청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·도지사가 보유하는 하역장비를 전용(專用)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용기간 동안 해양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 중 그 전용하여 사용하는 하역장비의 평가액에 해당하는 하역장비의 확보를 유예할 수 있다.
4.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. 다만, 제1호에 따른 시설기준 중 급지별 최저 시설평가액의 3분의 2 이상은 본인이 소유한 것이어야 한다.
 - 가. 해당 항만하역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
 - 나. 해당 항만하역사업자가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